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개정이유

도지사의 임용권중 일부를 기관장이 4급이상인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소속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의 일치와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기 관 명	위 임 내 용
지방공무원교육원	·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보건환경연구원	· 지방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충북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	· 7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산림환경사업소 농축산사업소	· 지방연구사 및 7급이하일반직, 기능직공무원의 소속기관내 전보권

※ 과(課)가 설치되지 않은 여성회관은 제외

개정조례(안) : 별첨

신구조문대조표 : 별첨

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
-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을 “소방서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제2조제4항중 “농촌진흥원장”을 “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제3조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중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

제5조중 “소방서장 및 농촌진흥원장”을 “소방서장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장, 농촌진흥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사업소장, 농축산사업소장”으로 한다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